

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14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3. 3
제안자	거창군수

■ 개정사유

- 수승대관광지내 “거창신씨요수종중” 소유의 토지 13필지, 100,098㎡와 구연서원 및 관련시설물(13건)이 관광객에게 개방 이용되고 있어 현재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보조하고 있으나,
- 토지 및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함.

■ 주요골자

- 관람료 수입금액 중 100 분의 20 이하 보조금 ⇒계약에 의한 사용료 지급

■ 개정근거

- 관광진흥법 제64조(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 제②항 군수는 관광지구내 거창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, 그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수입금의 사용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군수는 매년 관광지내 거창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관광 시설물 보존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	<p>제12조(수입금의 사용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군수는 관광지구내 거창신씨 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, 그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